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12. 20 선고 2022가단1255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득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2. 2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 B1)와 피고 C 사이에 2019. 8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9. 8. 12. 접수 제 68159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피고 B는 원고에게 15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9. 21.부터 2022. 12. 20.까지는 연
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기홍

별지

- 1) 'A'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.